

## 검 토 보 고 서

-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.
  
- 2004년 2월 1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고,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, 2월 19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된,
  -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  
- 먼저,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
  -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(2004.1.29 및 2004.1.30)에 근거하여, 기존의 총정원제에서 표준정원제로 정원제도가 변경됨에 따라,
  -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행정력 강화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.
  
- 주요내용으로는
  -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,823명에서 2,971명으로 14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,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(13명)은 변동이 없으며,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2,810명에서 148명이 증가된 2,958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.

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,

-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 
- '총정원제'에서 '표준정원제'로 정원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행정력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서,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  
- 다만, 증원되는 정원을 배치하기 위한 조직진단은 되었는지, 증원방법 및 배치일정계획, 증원되는 직종별, 직급별 배치기관, 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방안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